입소 계약 관리 규정

실로암 요양원
SILOAM NURSING HOME

제 1 장 총 칙

제1조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

① 실로암 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49명으로 한다.

② 입소 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 인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 판정 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3.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입소 모집 방법

1.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 시설의 블로그나 SNS 관리 등을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단위 경로행사, 직접 방문 상담, 전화상담, 지인소개, 보호자소개, 종사자소개 등 대상자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입소 안내 리플릿, 현수막, 홍보물 제작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 2 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 (계약 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1년 또는 장기 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등급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노인 장기 요양등급외 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④ 입소자의 모든 개인 정보(건강 상태 등)는 계약자(주보호자)에게만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입소자의 모든 외출, 외박, 면회 등의 내용은 계약자(주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 (계약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 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고 입소 보증금은 따로 받지 않는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식재료비와 간식비는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을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범위 외의 식재료비, 상급 침실료, 등급외자 입소 비용 등 비급여 항목 및 내역은 기관의 상황과 물가 상승률, 인건비, 입소자별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본인부담금

월 이용료에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본인 등급에 따라 공단 청구금액의 20%를 매월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12% 또는 8%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비급여 비용

가. 식재료비 : 1일 3식 9천원 (1식 3천원)

나. 간 식 비 : 1일 1천원 (1회 제공)

다. 상급 병실료 : 1인실-1일 1만원/ 2인실-1일 5천원

마.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장기 요양 등급외자 이용 시

3 ~ 5등급 수급자 기준 공단 청구금액의 전액(100%)을 부담한다.

제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 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 개선,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의무가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수급자가 장기 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10.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제반 사항의 변화 등으로 계약 당사자와의 협의로 결정된 경우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월별 비용 수납액 및 추가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 즉시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제 4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9조 (서비스의 내용)

시설에서 입소 생활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다음 사항으로 한다.

제10조 (서비스의 비용)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급여 종류 및 장기 요양등급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장기요양급여 비용 공단부담금은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한다. 외부병원 이용시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건강 및 간호관리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등 측정
건강관리	관절오그라듦 예방,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확인, 바르는 약 도포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기초건강관리(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인지훈련(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 등
간호관리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영양관리[튜브영양공급, 비위관(鼻胃管, L-tube) 교환 등], 통증관리, 배설관리[소변배출관(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요도샛길) 간호, 장루(창자샛길)간호, 배설간호 등], 당뇨발관리(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호흡기간호(흡인 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투석간호, 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시설환경관리	
침구·린넨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린넨 교환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인지 관리지원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응급벨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 도움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몸씻기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튜브영양공급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이동변기 사용도움,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탄성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삼킴 운동, 팔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제 5 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1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특별한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 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와 그 가족에게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내용이다.

②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 관찰과 집중 의료 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 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케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3. 어르신 상태 확인 후 보호자 소통 중요(통지, 의견. 요구 수렴, 시행)

제12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비용)

①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특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 2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 2인용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상급 침실 이용료 없이 시행할 수도 있다.

③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 한다.

제 6 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처리 절차

제13조 (의료 서비스 처리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 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어르신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 의사가 입소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 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즉시 보고 후 보호자 소통-> 조치

② 계약 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계약 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 상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계약 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계약 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 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 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라.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 등은 보호자에게 실비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1.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 및 협력 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⑤ 외래 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 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 어르신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⑥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이때 대표자(시설장)은 “연계기록지”를 교부해야 한다.

제 7 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②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시설물의 손궤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모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반입 및 소지 불가 물품은 혐오물품, 동물, 위험물품등이 있다.

⑥ 실로암 요양원은 실내 금연 건물이다.

제 8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대한 사항

제15조 (보험 가입)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시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지고 배상한다.

① 장기 요양 요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 요양 요원의 학대로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16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으로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